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9

발의연월일: 2020. 6. 10.

발 의 자: 김석기·정진석·추경호

이종성 · 송언석 · 안병길

이종배 · 성일종 · 김형동

임이자 · 박성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의 제목 중 "대도시에"를 "대도시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중 "대도시"를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로 하며, 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5조(<u>대도시에</u> 대한 특례인정)	제175조(<u>대도시 등에</u> 대한 특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인정) ①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u>대도시</u> 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	<u>대도시 및 인구 20만</u>
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수 있다.	<u>(이하 "특례시"라 한다)</u>
<u> <신 설></u>	②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